

강원도립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 운영 규정

[제정 2021. 2. 26. 제567호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강원도립대학교(이하 '대학'이라 한다)의 학칙 및 제반 규정을 제·개정함에 있어 법령 등 상위규정과 다른 규정과의 부합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총장 산하에 강원도립대학교 규정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 위원은 교학처장, 기획홍보처장, 사무국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가능한 행정학 또는 법학 전공 교수 등을 포함하여 교수 중 4인으로 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총무담당이 된다.

제3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사무국장으로 하고,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관장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 위촉직 위원중에서 임시 위원장을 호선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자문 또는 심의하며, 자문 및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면 총장은 특별한 사안이 없을 시 교무위원회에 상정한다.

1. 학칙 및 학칙 시행세칙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2. 각종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
3. 규정 제정이 필요하거나 불합리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권고

4. 규정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 등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② 결원으로 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임기가 새로이 시작되는 것

으로 본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1. 학칙 등 규정의 제·개정사항에 대해 자문·심의 요구가 있을 때
2.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
3. 대학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②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가부 동수의 경우는 위원장이 정한다.

③ 위원회는 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④ 상위 법령의 단순한 반영이거나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.

제7조(회의록) 회의록은 위원회 종료 시 자문·심의 결과를 요약 기록한 것으로 갈음하며,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교무위원회 부의 자료로 첨부한다.

부 칙(2021. 2 . 2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